대학재정지원 사업비의 올바른 집행관리를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 2020.9.16>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公的) 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해당 사업별 적용 규정과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라 올비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라 함)은 대학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자들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켜야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권고사항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사업이란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 두뇌한국21플러스사업(BK+),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 등을 의미합니다.

1. 목적

- 본 권고사항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업비 집행관리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비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본 권고사항에 없는 사항은 해당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관리지침, 사업의 시행요강 및 협약서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 ※ 본 권고사항과 해당 사업별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 권고사항은 향후 관련 규정 등의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 본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재단이 지원한 대학재정지원사업입니다.

3. 사업비의 집행관리 원칙

○ 재단이 지원한 사업비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확인

① 사업비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②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 ③ 사업비는 사업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관련규정 준수

- ④ 사업비 집행기준은 해당 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회계기준 및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 ⑤ 사업비 집행비목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르되, 대학의 회계비목을 참고한다.
- ⑥ 장학금과 인건비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급한다.

사용내역 입증

- ⑦ 사업비의 집행 수단은 신용카드(연구비카드 또는 법인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 ⑧ 사업비 집행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구비한다.
- ⑨ 모든 사업비는 대학의 장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전담부서에서 관리한다.
- ⑩ 동일 활동에 대해 사업비가 중복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대학이 지켜야 할 사항

- 대학은 소속기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 및 관리자들이 본 권고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비를 집행 및 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 대학은 필요 시 본 권고사항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 및 관리자는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시 본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1 사업비 집행관리 10대 원칙 상세 내역

사업계획 확인

① 사업비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변경하되,사안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비의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처리하되, 예산 변경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학지침 _예시)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절차

- 세부 프로그램 내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비목 내 변경 : 팀장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비목 간 변경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세부 프로그램 간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내용변경 없는 경우에 한함
- 2천만원 이내 변경 : 처장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2천만원 이상 변경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변경
- 단, 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에서 정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예시) 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 (사업비 항목내·항목 간 변경) 사업단 자체 심의·의결기구 기구를 통한 변경 ※ 한국연구재단 별도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LINC+ 사업비관리시스템에 탑재
-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및 변경사항은 사업 실적보고서에 작성·제출 ※ 매년 사업실적보고서 평가 및 사업비 회계점검 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점검
- <산학협력 고도화형> 인건비, 대학사업비(20% 이내) 등은 당초 계획 준수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산학협력 기반구축비 구성 비목의 사회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로의 전용 불가 ※ 단, 인건비 항목의 경우 잔여 재원 발생 시 전용 가능하나, 인건비 증액을 위한 전용은 불가

②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 이 대학의 일반적인 목적 업무 수행경비와 경상성 경비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고 교비를 활용해야 한다.
 - 일반적인 목적 업무 수행경비(예시) : 입시, 사업과 무관한 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등
 - 경상성 경비(예시) :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 비성 경비, 보직자 업무추진비 등

- o 해당 사업의 목적 및 계획과 무관한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는 집행 불가하다.
- ㅇ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 ③ 사업비는 사업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 o 다만,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관련규정 준수

- ④ 사업비 집행기준은 해당 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회계기준 및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 (예시1) 1일 당 최대 강의료 : 대학의 회계기준은 60만원이고 해당 사업의 집행기준이 50만원인 경우는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 (예시2) 1일 당 최대 강의료 : 대학의 회계기준은 60만원이고 해당 사업의 집행기준이 없는 경우는 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 대학 내 자체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완화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 ⑤ 사업비 집행비목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르되, 대학의 회계비목을 참고한다.
 - ㅇ 수행기관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관 기관의 회계지침 비목을 참고한다.
 - 국립대학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학회계 세출예산과목(제14조 관련)
 - 사립대학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의 별표 1(자금 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 ⑥ 장학금과 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에게만 지급한다.

- 사업비로 기존 교직원의 급여 지원은 불가하나,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는 집행 가능하다.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해당 사업의 특성 상 기존 교직원의 인건비 지급을 허용한 경우는 가능하다.
 - 해당 사업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인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o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한 특강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원고료, 프로그램 관련 학생 공모전 심사비, 현장실습 지도비 등도 지급할 수 있다.
- o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는 불가 하나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다.
- o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소속 대학의 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는 이들에게도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용내역 입증

- ⑦ 사업비의 집행 수단은 신용카드(연구비카드 또는 법인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 단, 신용카드(연구비카드 또는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계좌이체도 불가한 경우는 그 사유를 적시하고 사업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⑧ 사업비 집행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구비한다.
 - ㅇ 증명자료(예시) : 결의서, 영수증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등
 - 사업비는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후 지출해야 한다.
 - * 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내부승인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내부기안 등)
 - 회계 관련 증명자료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

- ⑨ 모든 사업비는 대학의 장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전담부서에서 관리한다
 - 대학은 사업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 여야 한다.
 -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은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대학 회계 내에서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대학은 일상감사 등을 통해 사업비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업비 중앙관리의 관련 참고사항

- 사업비는 사업책임자 등의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수 없다.
- 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교부하고 후 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관리 원칙에 위배됩니다(사업비 계정에 법인카드를 연결하여 카드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단,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비, 멘토링 경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학생에게 선 지급하고 결과보고 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원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 관련 서류를 구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학생이 아닌 담당교수 등에게는 선지급이 불가하다.

⑩ 동일 활동에 대해 사업비가 중복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동일 학생의 동일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하나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동일 학생의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 (예시) A학생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창업동아리를 지원받는 경우 LINC+사업을 통하여 창업동아리를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A학생이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창업동아리를 지원받고, LINC+사업을 통해서는 현장실습을 지원받는 것은 가능하다.
- A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이 A사업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B 사업에서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 단, B사업에서 허용하는 경우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원고료, 수당 등은 지원 가능하다.